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 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 이유와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된다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귀사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비로가격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 등 비로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고 종래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경쟁력하락을 타개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축소 개편해야 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한국중합노무법인한술사무(031-877-782-3)

Q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A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해 해

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Q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A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은 영업성

전·기·상·식

포천지점 수유관리과장 **나현철**



· 교류는 직류와 달리 발전기의 회전에 따라 전류, 전압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1초동안에 바뀐 회수를 주파수라고 함

·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하고 있음.

6) % : 역률

· 전기는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 모터는 역률이 낮은 대표적인 전기기기인데, 모터에 부차원(콘덴서)은 역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

7) 전력예비율

· 총 전력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 수요를 뺀 것을 최대 전력수율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전력의 공급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 공급예비율과 설비예비율로 파악하는데, 공급예비율은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 중 남아 있는 것의 비율이며, 설비예비율은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더하여 산출한 비율

문: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차지원과장(031-877-782-3)

일어두면 좋은 전기의 기초용어

1) V : Voltage 볼트(전압)

· 전기를 보내는 힘

· 수압을 높일수록 수돗물이 잘 나오듯이 전기도 전압이 높을수록 잘 통하게 됨 [예]110V, 220V, 380V 등

2) A : Ampere 암페어(전류)

·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 양

· 전선도 굵을수록 많은 양의 전류를 실어 보낼 수 있음

[예]220V, 600W의 전기다리미는 2.7A의 전류가 흐름

3) W : Watt 와트(전력)

· 전등이나 모터에 전기를 보내면 빛이나 힘을 내는 것처럼 전기가 일을 하는 힘(500W 다리미, 60W백열등)

[예]W(전력) = V(전압) x A(전류), 1KW는 1,000W,계약전력의 단위는 1KW

4) Wh : Watt hour 와트아우어(전력량)

·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 소비된 전력량의 단위

[예]100W전구를 10시간 사용하면 100W x 10h = 1,000Wh(1KWh)의 전력량이 소비됨

5) Hz : Hertz 헬쯔(주파수)

의·학·상·식

포천병원 정형외과장 **김형준**



의 석고고정을 하고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로서 종창에 대한 처치와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종창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 유지해야 하고, 환부에 붕점질을 합니다.

보행은 금해야 하며 수상 후 수일 내에 발목운동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발목과 발가락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움직이는 관절 운동을 합니다. 이는 종창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며, 손상 받은 인대의 치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위 근육의 악화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뺀 경우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치유가 늦어지거나 때로는 만성적인 염좌 상태가 되어 반복해서 발목을 빼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탈구나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발목을 삐었어요

누구나 한두 번은 발목을 삐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달리기나 혹은 걷다가도 발을 헛디뎠을 경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삐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를 의학용어로는 '염좌(sprain)'라고 합니다. 발목 주위에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발목의 운동을 제한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원위 경비인대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가 외상에 의해 손상 받는 것을 염좌라고 하며, 그중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다치고 나서 발목 주위가 붓고(종

창), 아프며(동통) 눌러 보아 국소적인 통증이 있으면(압통) 인대 손상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상력과 국소적인 종창, 동통 및 압통이 있으면서, 방사선 검사상 골절이 없는 경우에 염좌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발목을 좌우, 앞뒤로 제껴 보는 긴장력 검사를 하여 관절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방향을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단순 압박붕대 혹은 반창고 고정을 실시하고,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인대의 불안정 손상은 3주간의 석고붕대 고정(소위 깁스)으로 치료합니다. 인대의 완전 파열로 대단히 불안정할 경우에는 4내지 6주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중중총회소집권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참석으로 치유되는지】

Z중중의 임시총회는 관례적으로 중중의 유사로서 Z중중을 대표하여 왔으나, Z중중의 중순도 아니고 대표자직이 있는 연고환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중중원인 甲이 다른 중중원 丙·丁과 공동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중중대표자를 선임하였습니까. 그런데 중순인 戊는 위임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을 다른 중중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경우 戊의 위임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임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

A 중중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중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중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중중규약

의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중의 대표자직이 있는 연고환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중중원의 총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중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

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중중에 평소 중중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환존자가 중중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함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연고환존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연고환존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연고환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관례상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중순 戊가 위임총회에서 위임의 형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임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임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도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2차 피해)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여하한 형태이든 일정한 사회적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 또는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기계의 발동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변사람들의 책망, 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 않은

상처를 준다. 그밖에,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 태도, 불친절 더 나아가서는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

전술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는 심리적 외상(또는 외상성 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과 그 결과에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에 동참하기를 꺼린다. 다른 사람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도 같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회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피해자가 혼자서 위험한 곳에 갔다가나 옷차림이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강간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타인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피해자마저 동참하는 경우가 있다. 즉, 피해자는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고문피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고문피해자 중 자기가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사람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피해에 관해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보따리상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과세제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속칭 보따리상)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등록증, 인수를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A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 241조에서 휴대품이나 탁송품 등은 수출신고를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간이수출신고를 생략하고 휴대반출 하여 외국에서 매각하고 국내은행에서 외국환을 매각할 경우 과세제화

의 매출장소가 외국인지의 사실관계가 영세율 적용 여부의 논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비추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화거래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외국으로 과세제화를 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국외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제심판 결정내용 등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안 병 호 대표이사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변압기 절연유 실험



◆변압기 부하 점검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